

글로벌사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규정 제274호

글로벌사업규정

확 정 일 : 2022년 11월 28일

시 행 일 : 2022년 12월 1일

글로벌사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글로벌사업규정 전부개정(안)

제정 2009.10.01 규정 제36호
개정 2011.07.28 규정 제67호
개정 2014.09.25 규정 제119호
개정 2018.03.26 규정 제175호
전부개정 2022.11.28 규정 제2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및 「해외건설촉진법」 제17조의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외에서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현지국가”란 공사가 사업을 진행(검토, 예정, 착수, 준공, 관리·운영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사업대상국을 말한다.
3. “사업비”란 사업에 소요되는 용지비 및 조성비, 건축비, 운영비 등 해당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4. “글로벌사업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란 1호에 따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해외지사 등”이란 공사가 글로벌사업의 사업수행을 위해 현지국가에 설치하는 지사 및 대표사무소 등을 말한다.

6. “협약 등”이란 글로벌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사가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추상적·포괄적 내용으로 구성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합작계약서(JVA)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서면합의서를 말한다.

7. “투자”란 글로벌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사가 사업비를 직접 투자하거나, 글로벌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자본금 등에 출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특례) 현지국가의 제도 및 여건 등이 상이하여 이 규정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장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사항

제4조(관련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마련) 공사는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지국가 및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사초청 연수 등 상호간 인적교류 및 세미나 등의 공동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에이전트 등 활용) 주관부서장은 특정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현지조사 등 사업준비, 계약협상 및 체결 등 사업참여, 사업수행, 사업종료 등에 필요한 경우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용역 및 자문) 주관부서장은 사업의 준비 및 수행을 위한 조사,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회계·세무·법률·기술·마케팅 등과 관련한 검토가 필

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에 용역이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실무자문단)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의 준비 및 수행과정에서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사내 관련부서 담당자를 포함한 실무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문단은 사업별 타당성조사용역의 착수·중간·준공보고회 참석 및 주요 사업현안사항에 대한 수시자문을 통하여 분야별 검토내용 검증 및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국외근무직원 파견) ① 공사는 현지국가에서 사전조사, 현지 정부 및 공동투자자 협의, 국제입찰 및 계약체결, 사업관리 등의 해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외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국외근무직원의 파견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사업타당성 검토 및 이의 검증을 위한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완료 후: 1인 이상

2. 법인설립, 자본금 납입, 사업착수 등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 최종 의사결정 완료 후: 2인 이상

③ 주관부서장은 사업별 여건,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글로벌사업담당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사업타당성 검토 완료 전 국외근무직원을 파견하거나 제1항의 파견 시기 및 인원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에서 국외근무직원 파견대상 사업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외근무직원 1인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다.

제9조(글로벌사업 역량 강화) ① 주관부서장은 공사의 글로벌사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사업 유경험자, 국외위탁교육 이수자 및 외국어 능력 우수자 등을 포함한 글로벌사업전문인력군을 구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글로벌사업전문인력군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글로벌사업 수행 관련 전보 및 국외근무직원 파견이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에게 글로벌사업전문인력군에 대한 우선 고려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준비

제10조(정보수집) 주관부서장은 글로벌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및 외교공관, 유관 공공기관, 단체, 기업,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 ① 주관부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 등의 확인, 추가적인 자료입수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지조사 시 현지국가의 법률, 세제, 기술, 시장환경 등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동행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후보지선정) 주관부서장은 제10조 및 11조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등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을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후보지 선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협약 등의 체결) 글로벌사업 관련 협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법률지원 담당부서의 검토 또는 법률·계약분야 외부전문가 2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타당성 검토) 주관부서장은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투자의사 결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 설립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입지 및 개발여건
3. 시장 및 수요여건
4. 사업계획(안)
5. 사업비 산출내역 및 투자계획
6.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
7. 사업구조 및 자금조달계획
8. 사업의 관리 및 운영계획
9. 기술적·경제적·재무적 타당성
10. 기회 및 위험분석
11. 정책목표 달성 및 기업지원 기대효과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컨소시엄 구성 등) ① 공사는 합작법인 설립 및 공동투자를 위한 사전준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컨소시엄 구성원 간 역할분담 및 권리·의무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사업개요 및 목적

2. 컨소시엄 등의 성격 및 주관사
3. 컨소시엄 등의 구성원 간 업무범위,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수익분배방식 및 소요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5.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6.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컨소시엄 구성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제3의 기업 및 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에 공사가 참여하거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 정책자금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절차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3항의 컨소시엄 구성원 선정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컨소시엄 구성 공모 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1. 재무여건
2. 유사사업 수행실적
3. 컨소시엄 참여조건 제안내용
4. 그 밖에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투자의사 결정) ① 주관부서장은 글로벌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운영규정, 경영심의회 운영규정 및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에 따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투자심사위원회 부의 전 사업 타당성 검토내용에 대한 객관성 검증 및 잠재적 리스크 요인 검토를 위해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사업수행

제17조(현지법인 설립) ① 공사는 투자 의사 결정이 완료된 경우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1항으로 설립된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제3자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의 규모 및 비율, 출자자 간 역할·책임·권리, 수익배분 및 기타 상호간에 합의한 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출자자와 합작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투자의사 결정이 완료된 모든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지 법인이 공사의 출자 목적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총 사업비, 예산 및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단일업무 기준 1억원 이상의 자금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인건비, 세금 및 월정액의 고정경비 제외)

나.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1억원 이상의 용역 발주에 관한 사항

다. 공사·용역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 한함)

라. 공급단가 결정 및 공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합작계약서 및 현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장은 현지 법인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심사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④ 공사는 현지 법인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합작계약 및 현지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현지 법인에 파견하거나 현지 법인의 직원 채용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시공평가) 공사는 해외사업의 기술수준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제20조(설치) 주관부서장은 글로벌사업 추진에 따른 후보지선정, 투자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검증을 위해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1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17명 이내의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은 동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되고, 자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자문안을 부의한 글로벌사업주관부서 담당부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예산담당부장, 사업심의담당부장, 계획·개발·설계담당부장, 재무담당부장, 부동산금융담당부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⑤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해외건설사업 관련 건축, 토목, 도시계획, 법률, 금융, 국제관계 및 기타 지역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사전에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개최시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 중 선정한다. 이 경우 동일 분야의 위원들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필요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경우 주관부서장이 이에 준하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1. 사업타당성조사 착수 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업참여 여건 검토
2. 경영투자심사위원회 부의 전 사업타당성검토 내용의 검증
3. 공사발주 전 사업타당성 재검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기능별 검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가. 사업개요

나. 대상지 현황 및 개발여건(인허가 및 토지확보 여건 포함)

다. 사업계획 수립 현황

라. 공동투자자 현황

마. 타당성조사용역 시행계획

2. 제1항제2호: 제14조의 검토사항

3. 제1항제3호: 제2호의 검토사항 및 실시절차 결과, 공사발주 계획

제23조(운영) 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개최를 위해 자문위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을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

까지 위원회 개최계획을 미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현장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 시 서면 또는 비대면회의(영상회의) 형태로 개최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대리참석을 불허한다.

③ 사업의 성격상 대외보안 또는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글로벌사업담당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자문의견 제출)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 종료 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자문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회의결과 보고)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 종료 후 참석위원 현황, 위원별 자문의견 등 회의결과를 향후 조치계획과 함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문안건 및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모든 참석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수당지급)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해외지사

제28조(해외지사 등 설립)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지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지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해외지사 등의 운영) ① 주관부서장은 해외지사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국외근무직원 중 1인에게 해외지사장 또는 대표사무소장 등(이하 “해외지사장 등”이라 한다)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외지사 등의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해외지사장 등에게 있다.

제30조(업무 수행) ① 해외지사장 등은 다음연도 지사의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 후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현안 등 발생 시 별도로 업무현황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외지사 등에 파견된 국외근무 직원은 본사 복귀 등 사유로 인하여 소관 업무가 바뀌는 경우 업무인수인계서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④ 해외지사장 등은 해외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차사무소 운영현황
2. 임차숙소 운영현황
3. 임차차량 운영현황
4. 현지직원 채용현황
5. 예산운영 내역

제31조(예산계획 수립) ① 해외지사장 등은 다음연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연도 예산계획의 제출 시기 및 예산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사의 예산편성기준을 따르며, 상세기준은 주관부서장과 예산담당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자금집행) ① 해외지사장 등은 분기 단위로 필요한 자금을 본사에 배정 신청하여야 하며, 매월 자금집행내역을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외지사 등의 모든 자금은 은행에 예탁(豫託) 관리하여야 하며, 현금보관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최소 규모로 한다.

③ 해외지사 등의 모든 자금은 은행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를 통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사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해외지사장 등은 자금관리를 위해 계좌개설을 할 때에는 미리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자금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해외지사 등의 계좌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3조(정산) 전도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미화 이외 현지화로 지출한 경우 서울외국환중개회사의 최종 기준 월평균매매기준율(월평균매매기준율이 없을 경우 월말 기준 비고시환율)에 따라 환산한 미화를 정산액으로 한다.

제34조(사무실 임차) 해외지사장 등이 현지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물의 위치, 구조 및 규모 등에 관한 설명서 및 다각도 사진
2. 임차 건물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서
3. 계약서안
4. 중개수수료 등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증명서류

제35조(현지직원 고용) ① 해외지사장 등은 해외지사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② 현지직원의 고용 계약 시 국내 및 현지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지직원의 고용기간, 복무규율, 근무시간, 휴가, 급여, 퇴직금 등 고용조건을 고용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③ 해외지사장 등은 현지직원의 고용 및 퇴직 시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해외지사 등의 청산)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의 종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외지사 등이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이 종료된 후 잔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지사 등의 규모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결 및 이관(耳管)에 관한 사항

2.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해외지사 등의 청산, 폐쇄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종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내용 등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외지사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철수할 경우 잔여재산 등은 사전에 본국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해외지사장은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따른 신고기관에 신고 등 청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 전에 이미 방침 등이 결정되어 사업추진 중인 경우 또는 공사와 현지정부 간의 양해각서 등이 체결되어 후속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글로벌사업 협약 등의 체결을 위한 자문의견서

자문안전	
의 퇴 인	

☐ 협약서 등 체결안의 적정성 판단

① 협약서 등을 체결하려는 취지를 잘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적정	부적정
② 관계 당사국 법규위반, 정치적/종교적/윤리적/문화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적정	부적정
③ 관계 당사국에서 불공정성, 부패, 특혜 등의 논란을 야기하거나 관련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도록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적정	부적정
④ 적용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없고 분쟁 발생시 신속명확히 해결이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적정	부적정
⑤ 불필요하거나 오해소지가 있는 문구나 용어 등이 없도록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적정	부적정

☐ 위 “부적정” 의견 제시 이유

☐ 기타 자문의견

[제출일] 20 년 ____월 ____일

[제출자]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24조 관련) 자문의견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자 문 의 건 서

안 건	
개최일	
위원명	

검토 및 자문의견

자문위원 :

(인)

보 안 각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참여분야 :

본인은 0000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글로벌사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자문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LH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관련 자료는 자문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으며 사본(사진촬영, 복사, 스캔 등)을 보관하지 않고 회의 종료 즉시 반납한다.
2. 업무상 인지한 사실에 대한 일체의 보안유지 및 자료 유출 등 본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